

코로나19 대응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안내

- ◆ 고용노동부는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①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비율 인상 ②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금 한시 지급 ③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 위기업종 지정 검토 등을 추진 ('20.2.28 발표)

1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비율* 인상 : (기존) 2/3 → (인상) 3/4

※ (참고) 고용유지지원금 :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, 인건비 일부 지원

- (지원 내용)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*의 3/4 지원

*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 필수

<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>

사 례	구 분	기 존	지원비율 인상
3개월 평균임금 200만원	휴업수당(A)	140만원	140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93만원	105만원 (+12만원)
	기업부담금(A-B)	47만원	35만원 (-12만원)

- (지원 대상)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, 「고용보험법시행규칙」제24조*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,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**하는 경우

*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** 매출액 감소,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

- (지원 조건)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,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(연 180일 한도 내 지원)
- (지원 기간) 6개월('20.2.1~'20.7.31) 한시적으로 인상, 추후 연장여부 검토

▶ 신청 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온라인 신청

2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지원금 한시 지급

※ (참고) 가족돌봄휴가 :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
→ 무급휴가로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, 별도 정부지원금 없음

- (지원 내용) 근로자 1인당 5만원/日,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*
 - * 외별이 근로자 최대 5일(총 25만원), 맞벌이 근로자 최대 10일(각 5일, 총 50만원)
 - (기존) 별도 정부지원금 없음 → (변경) 한시적 정부 지원
 - (지원 대상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
 - (지원 기간)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('20.1.20)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
 - *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미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
- ▶ 신청 방법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온라인 신청
('20.3.16부터 신청 가능)

3 특별고용위기업종* 지정 검토

- *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경우, 고용유지지원금, 전직·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, 지원수준 상향
-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,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검토